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 계 · 시 정 요 구

제 목 보행자 위험안전시설(부적격 블라드) 관리 업무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, 공주시

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천안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○○과)

② 충청남도 공주시 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2. 8. 10.~2017. 7. 16. 까지 천안시 ○○○○
과(전 ○○과)에서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7. 18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
공주시 ○○과에서 각각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·철거 관련 업무 실무담당자로서
근무하였다.
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‘07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자동차 진입억
제 말뚝(Bollard)과 관련하여 “5년 내에 부적격 블라드를 개량하라”고 국토교통
부에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, 그동안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부적격 블라드에 보
행자가 걸리는 사고로 배상금을 지급한 건이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였
다.

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2014년도 2월 경기도 특정감사 및 시·도 정부합
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부적격 블라드는 전면 철거하라고 처분요구 하였으며, 또

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4년 9월 충청남도 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시·군에 위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블라드에 대한 사전감사 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시·군에 총 2,700개의 불량 블라드가 지적되어 2014. 12.월 충청남도에 전면철거 또는 교체할 것을 감사 처분한 바 있다.

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 시·도의 공통사항으로 파악되어 2015. 1월 전국 시·도지사에게 부적격 블라드를 전면 철거하라고 ○○담당관실에서 공문으로 통보하였다.

「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2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치기준이 되어 있다.

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기준(별표1)

- | |
|--|
| <p>가·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나·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다·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80~100cm 내외로 하고, 그 지름은 10~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.</p> <p>라·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.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.</p> <p>마·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로하되,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</p> <p>바·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30cm 전면(앞쪽)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|
|--|

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행정자치부 ○○담당관-000호(2014. 12.)로 통보한 보행자 위험안전시설(부적격 블라드) 처분요구 건에 대하여 2016. 1월 전면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, 2017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조사 시 불량 블라드를 전면 재조사요구 하였던 바,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

우 ○○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 시설물을 이관 받지 않은 도로로써 담당자가 착오로 인하여 677개의 불량 볼라드를 누락하였다고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.

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불량 볼라드가 단 1개도 없다고 조사결과를 제출하였으나, 2017. 11. 16. 충청남도 도로과 실무담당자들이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 바다수의 이면도로 등에 화강석, 스테인레스 등 불량 볼라드 250개가 확인되었으며, 또한 공주시의 경우에도 총 17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따라서 천안시와 공주시에서는 지금까지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모두 철거한 것으로 자료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

동 건 관련하여 충청남도(○○과)에서는 감사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시·군 지도·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불량 볼라드가 미 철거(총 1,140개)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] 부적격 볼라드 현황

(2017. 11. 24. 현재, 단위 : 개소)

시군	계				일반국도·지방도				시·군도				면도·이면도로			
	계	화강석	철재	기타	소계	화강석	철재	기타	소계	화강석	철재	기타	소계	화강석	철재	기타
계	1,140	961	179	0	0	0	0	0	474	372	102	0	666	587	77	0
천안시	250	148	102	0	0	0	0	0	250	148	102	0	0	0	0	0
공주시	173	173	0	0	0	0	0	0	173	173	0	0	0	0	0	0
아산시	677	609	68	0	0	0	0	0	51	51	0	0	626	558	68	0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, 공주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미철거 불량 블라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 등 정비하고,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행시설물의 구조·설치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시·군에 대한 지도·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